발간 등록 번호 전북교육 2021-126



2021. 김제특수교육운영계획



차 례

	김제특수교육 기본방향	1
	김제특수교육 현황	5
	2020. 김제특수교육 주요 성과	9
IV	2020.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	13
V	2021. 김제특수교육 주요 추진 과제	19
	1.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-1.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연수 1-2. 개별화교육계획 수립·운영 지원 1-3. 특수교육대상 영·유아교육 지원	20
	1-4.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·체육 활동 지원 2. 통합교육환경 조성 2-1.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2-2. 순회교육지원 강화	28
	2-3.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3. 특수교육 진로·직업교육지원 3-1.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·직업 교실 운영	35
	3-2.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원 4.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	40
	4-1.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4-2.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-3.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•평가 지원	
	4-4.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5.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강화 5-1.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5-2.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5-3.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아 무상교육 지원 5-4.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학교 지원 5-5.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	49
VI	5-6.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부록 1.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2021년 업무 추진 계획 2. 특스하구 및 통하하구 협화	60

너와 나 우리함께 김제특수교육

I. 김제특수교육기본 방향

- 전라북도 교육 기본 <mark>방</mark>향
-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 및 목표
- 김제교육의 기본 방향
- 김제특수교육의 비전 및 목표

1 전북교육 기본 방향



2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 및 목표

비전

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

목표

- ▶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
- ▶ 가정, 학교,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
- ▶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

	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
.	2 통합교육환경 조성
추 진 과	③ 특수교육 진로·직업교육 내실화
제	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
	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

3 김제교육 기본 방향



4 김제특수교육 비전 및 목표

교육지표

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



실 천 지 표

- ◎ 특수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
- ◎ 가정, 학교,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
- ◎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



추 진 과 제

- ◎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
- ◎ 통합교육환경 조성
- ◎ 특수교육 진로·직업교육 지원
- ◎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
- ◎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강화

너와 나 우리함께 김제특수교육

Ⅱ. 김제특수교육 현황

- 김제특수교육 현황
- 특수학급 현황

1 김제특수교육 현황

가. 관내 특수학급 학생 현황

	유치원]	Ž	도등학.	ī.		중학교	1_	ت	<u> 1등학</u>	1		계	
교	학급	학생	교	학급	학생	교	학급	학생	교	학급	학생	교	학급	학생
2	3	11	21	22	80	3	4	20	2	3	12	28	32	123

^{※ ()}는 특수학급 설치교 내 완전통합학급 및 학생수

나. 특수학급 미설치교(일반학급) 학생 현황

	유치원	Ž	츠등학교		중학교	ī	1등학교		계
교	학생	교	학생	교	학생	교	학생	교	학생
1	1	11	14	4	6	2	3	18	24

다. 특수교사 현황

순	학교급	특수학급수	특수교사수
1	유치원	3	3
2	초등학교	22	22
3	중학교	4	4
4	고등학교	3	3
계		32	32

2 특수학급 현황

가.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

순	유치원명	학급수	주소
1	김제초등학교 병설유치원	2	김제시 서낭당길 31
2	김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	1	김제시 중앙13길 18

나.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

순	학교명	학급수	주소
1	공덕초등학교	1	김제시 공덕면 공덕로 248
2	김제초등학교	2	김제시 서낭당길 31
3	김제검산초등학교	1	김제시 도작로 122
4	김제동초등학교	1	김제시 중앙13길 18
5	김제북초등학교	1	김제시 콩쥐팥쥐로 306-56
6	김제중앙초등학교	1	김제시 동서로 193
7	난산초등학교	1	김제시 백구면 금백로 1213
8	남양초등학교	1	김제시 황산면 남산로 366
9	만경초등학교	1	김제시 만경읍 능제2길 2
10	백석초등학교	1	김제시 백산로 54
11	봉남초등학교	1	김제시 봉남면 조양1길 11
12	부용초등학교	1	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030
13	성덕초등학교	1	김제시 성덕면 대석로 75
14	심창초등학교	1	김제시 진봉면 지평선로 1295
15	용동초등학교	1	김제시 용지면 용덕길 36
16	용지초등학교	1	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462
17	원평초등학교	1	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101
18	죽산초등학교	1	김제시 죽산면 죽산2길 13
19	청하초등학교	1	김제시 청하면 대청4길 25
20	황강초등학교	1	김제시 공덕면 유강4길 94
21	황산초등학교	1	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75

다. 중학교 특수학급 현황

순	학교명	학급수	주소
1	김제여자중학교	1	김제시 중앙로 137
2	김제중학교	2	김제시 중앙로 274
3	용지중학교	1	김제시 용지면 황토로 702

라.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

순	학교명	학급수	주소
1	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	1	김제시 남북9길 23
2	김제여자고등학교	2	김제시 중앙로 193

너와 나 우리함께 김제특수교육

Ш. 2020.

김제특수교육 주요 성과

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

사업명	추진내용
특수교육 관련 교원 연수	○특수교육 담당교사 연수 -원격연수를 통한 교과관련 연수: 2회 -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연수: 11월, 1회 -비대면 협의회 및 보드게임 자율연수: 12월, 1회 ○진단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-지능검사(K-WISC-V)실시를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: 6월, 2명 -특수교육운영 및 진단평가위원회 연수: 9월, 15명
유치원 통합교육 프로그램	-유치원 통합교육 지원 놀이프로그램 운영: 6~12월, 12회
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·체육 활동 지원	○문화예술프로그램 -팝아트 및 미술활동: 6~12월, 36명, 58회 ○체육프로그램 -배드민턴(초등): 6~12월, 18명, 21회 -볼링(중·고등): 7~8월, 22명, 8회 -「놀이에서 스포츠를 배우다」: 11.6.(금), 19명

2 통합교육 내실화

사업명	추진내용		
통합학급 연수 지원	-일시: 2020.7.20.(월) -대상: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20 여명 -내용: 청각장애학생 이해 및 지원방법		
보조공학기기 지원	-기간: 3~12월 -내용: 태블릿 PC, 인공와우배터리, 의사소통기기, 노트북, 욕창예방쿠션, 긴급피난대피보조기구 등 6종 47개		
순회교육지원	-기간: 4~12월 -대상: 유 2 명, 초 1 명, 중 1 명(총 4 명) -내용: 센터 순회교육 담당교사가 방문교육 실시		

3 진로·직업교육 지원

사업명	추진내용			
	○진로·직업교육: 6~12 월, 70 명, 125 회			
	대상	내용	참여인원(명)	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제과제빵	40	
	초등	목공클라스	21	
	중등	토탈공예	11	
	8 0	정리수납 2급 자격증	10	
진로·직업교실		제과제빵	13	
	고등	토탈공예	13	
		바리스타 체험	13	
	○바리스타 및 카페 운영 -기간: 6~12월 -내용: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전원 취득(3명) ○「우리마을 직업체험」 -원예농업체험: 11~12월, 77명, 28회 -고구마 농장체험: 10~11월, 13명, 3회			
	시기	대상	내용	
	여름방학	유·초등학생	동화책을 통한 생활요리	
방학프로그램	(8월)	중·고등학생	도자기 체험	
	겨울방학 (1월)	유·초·중·고등학생	원예테라피	

4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

사업명	추진내용
장애인식개선교육	○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: 10~12월, 598명, 30회 -내용: 역할극을 통한 장애 이해 및 공감 ○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: 70명, 1회 -일시: 2020.7.1.(월) -내용: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
	○인권지원단 협의회: 7월, 12명, 1회		
	○정기 현장 지원: 1~12월, 70명, 23회		
	○더봄학생 맞춤 지원 프로그램: 8~12월, 11명		
	-내용: 개별 성교육 상담, 원예테라피, 또래관계개선 프로그램 등		
	○집단상담 성교육: 6~12월, 92명, 39회		
장애학생	○체험관 성교육: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, 11월, 26명, 2회		
인권보호 강화	○「다같이 장애인권 챌린지」: 11월, 224명, 4회		
	-장애인권 온라인 퀴즈 및 동영상 챌린지		
	○찾아가는 인권교육: 6~10월, 335명, 12회		
	-지역사회기관 연계(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, 전북보조기기센터,		
	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)인권교육 실시		
	○장애인권 인형극: 12월, 31명, 2회		
- 특수교육운영위원회	-기간: 1~12 월, 19 회(대면심사 15 회, 서면심사 14 회)		
	-내용: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신청 및 재배치, 유예, 선정취소,		
개최	지도사 배치 등		
	○「가족사진 찍는날」: 11~12월, 91명, 20가족		
ᇀᄉᄀᄋᇊᆘᇧᆦᆉᇄ	○「가족행복밥상」: 12 월, 61 가족, 1 회		
특수교육대상학생	-김밥재료 배부 및 가족활동사진 응모		
가족지원	○학부모 동아리 운영: 7~11월, 5명, 17회		
	-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 실기교육		

5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강화

사업명	추진내용
방과후학교 및 치료지원	-일자: 연중 -대상: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-내용: 방과후학교 지원비 교부 및 치료카드 발급 -추진현황: 치료카드이용 112 명, 순회치료 14 명, 방과후 88 명
원격수업「가정학습 꾸러미」지원	-4~9월, 136명, 2회 -내용: 수준별 가정학습꾸러미 구성 및 배포

너와 나 우리함께 김제특수교육

IV.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

-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
-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
-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분장

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

가. 운영 목적

- 1)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, 진단평가 지원, 정보관리, 특수교육연수, 교수학습활동 지원,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학교현장 지원 확대
- 2)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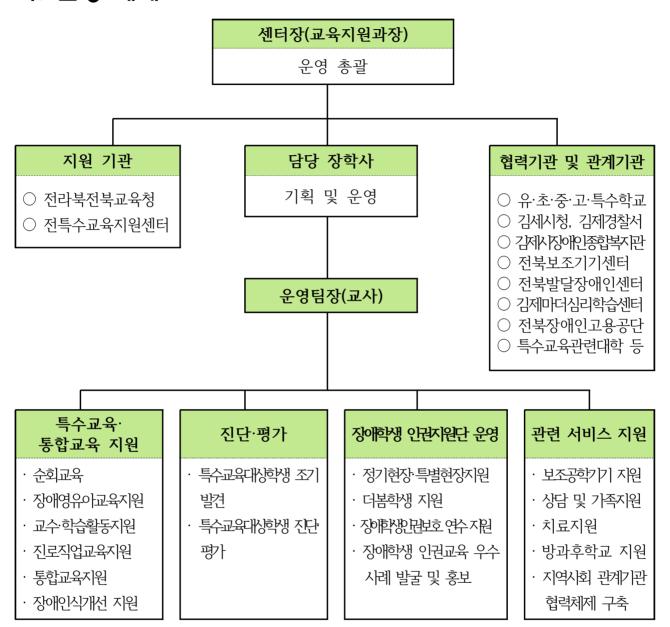
나. 운영 근거

- 1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(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·운영)
- 2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(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)
- 3) 「2021년 전북특수교육운영계획」(2021.1.22.)

다. 운영 방침

- 1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명시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센터 기능별 내실화 운영
- 2) 특수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
- 3)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4) 지역특성 및 교육적 필요를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
- 5)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·평가, 상담, 장애 영유아교육, 교수학습 지원,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, 직업교육 지원 등 학교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지원의 전문성과 다양화를 도모하는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

라. 운영 체계



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

(명)

센터장	담당 장학사	교사	운영강사	특수행정 실무사	치료사	계
1	1	5	1	2	1	11

3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분장

담당자	담당 업무	전화번호
특수교사 (팀장/중등)	○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운영 전반 -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-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-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-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관리 등 ○진단평가 위원회 운영 ○순회교육 운영 전반 ○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지원 ○진단평가, 순회교육, 통합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(중등)	540-2591
특수교사 (중등)	○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지원 전반 -진로직업교실 및 일상생활 프로그램 -교육기관 내 일자리 사업, 현장실습 -직업평가,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등 ○특수교육관련 교원연수 운영 ○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등 지원 ○진단평가, 순회교육, 통합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(중등)	540-2593
특수교사 (초등)	○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업무지원 전반 -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관련(신규, 재배치, 유예 등) -진단평가 협의회 운영 -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등 ○특수교육대상학생 입(진)학 설명회 ○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 및 연수 ○특수교육통계, 연차보고서, 현황 등 정보관리 ○문화예술·체육 프로그램 운영 ○진단평가, 순회교육, 통합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(초등)	540-2597
특수교사 (초등)	○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전반 -인권지원단 및 인권연수 -장애·인권 관련 행사 -장애학생 성교육 프로그램 등 ○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전반 ○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 ○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등 지원 ○진단평가, 순회교육, 통합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(초등)	540-2592

담당자	담당 업무	
특수교사 (유아)	○장애 영·유아 업무 운영 전반 -장애 영아 프로그램 -조기발견, 선별 및 홍보, 무상교육비 -유치원 통합거점 프로그램 등 ○가족지원프로그램, 학부모동아리 운영 ○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(치료, 방과후, 통학비) ○특수교육대상학생 입(진)학 설명회 지원 ○진단평가, 순회교육, 통합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(유아)	540-2598
특수강사 (중등)	○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교구대여 ○유형자산 물품 및 관리 ○장애인식개선 교육(학생 및 교직원) ○장애인편의시설 업무지원(중등) ○카페 꿈내림 운영 및 관리 ○주간업무작성 및 일정 관리 ○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○진단평가, 통합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	540-2595
특수행정 실무사	○기간제교사, 특수강사, 사회복무요원, 특수교육지도사 등인건비 지원 ○순회치료사 인건비 및 여비 지원(음악) ○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, 통학비, 방과후비 교부 ○꿈활짝 카드 발급 및 관리 지원 ○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관련 업무 지원(교원연구비, 순회수당, 강사수당, 인권지원단 여비, 심사수당 지급, 각종 위원회 등) ○특수교육지원센터 물품 구매 및 관리(일상경비) ○특수교육지원센터 물품 구매 및 관리(일상경비) ○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행사지원	540-2594
특수행정 실무사	○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수당 및 여비 지급 ○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채용 업무 ○기타 자료취합 업무 지원 ○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& 보도자료 관리 ○특수학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인건비 ○특수교육관련서비스 외 기타사업 운영비(재배정) 교부 ○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지원금 지원 ○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강사 인건비 지원 ○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행사지원	540-2596

-	18	-	

너와 나 우리함께 김제특수교육

V. 2021.

김제특수교육 주요 추진과제

0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

- 1-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연수
- 1-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·운영 지원
- 1-3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지원
- 1-4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

1-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연수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강화
- ▶ 특수학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원에 대한 전문성 확대

**교육기본법 제18조(특수교육), 특수교육법 제8조(교원의 자질향상)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(교원의 자질향상)

□ 추진 내용

구분	대상	연수내용	시기
특수교육 교원 연수	유.초·중·고 특수교육 교원	-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안내 - 특수학급 교육과정운영 역량강화 - 진로·직업교육 역량강화 연수 - 특수학급 및 센터 담당자 간담회	연중
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워크숍	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	- 타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직업거점센터 선진지 시찰	7월



1-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·운영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

※특수교육법 제22조(개별화교육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(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)

□ 추진 내용

구분	내 용	시기
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	-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팀 구성 - 보호자, 특수교육 교원, 일반교육 교원,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,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	3월
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	-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-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시 전입학교로 14일 이내 개별화 교육계획 송부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, 교육목표, 교육내용, 교육방법,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**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시,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	3월
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	- 매 학기마다 통합학급 교사,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 자에게 통보	학기말
개별화교육지원 강화	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자원봉사자, 사회 복무요원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확대	연간

□ 유의사항

- ㅇ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학급 교사,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
- ○특수학급 미설치교 일반학급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하고,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
 - 지원 요청: 김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(☎540-2591)

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 자료 ■

개별화교육계획

1.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 사항 및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

이 름		개별화교육지원팀	1학기
생년월일	년 월 일생	팀장(관리자)	
학년 반	학년 반	팀원(보호자)	
장애 유형(등급)		팀원(진로 담당)	
배치 결과통지서 번호		팀원(일반교사)	
주 소		팀원(특수업무)	
T ±		팀원(관련서비스)	
배치 유형	■ 일반학급 배치	□ 특수학급	급 배치
1학기 개별화교육	1학기	2021 2 1	- 2021 09 24
시작 및 종결 시기	1억기	2021,3.1	~ 2021.08.24.

2.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

구 분	1학기
치료지원	
방과후 활동 지원	
통학비 지원	
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	

3. 현재 학습수행 수준

현재학습	내 용
수행 수준	

4. 교육목표, 교육내용, 교육 방법, 평가계획

영 역	1학기
교육목표	
교육내용	
교육방법	
평가계획	

1-3 특수교육대상 장애 영·유아 교육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
- ▶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력 향상
- ※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 등), 제14조(장애의 조기발견 등), 제18조(장애영아의 교육 지원)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(의무교육의 실시), 제13조(장애영아의 교육지원)

□ 추진 내용

- 가.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
 - ㅇ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이행 철저
 -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학급 설치나 특수교사 배치
 -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입학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
 - ㅇ특수교육대상 장애 영아 교육 지원
 -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통한 지원 강화
 - 장애영아의 조기발견과 교육 기회 확대 노력
 - ※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「영유아보육법」 제 34조의 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가능(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-4383, 2020.8.24.)
 - ㅇ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(나이스) 사용 의무화
 -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재학 중인 유아의 학적 등록·관리 필수
 - ㅇ순회교육 지원
 -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지원
 - 특수교육대상 영아 선정 시 필요한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결정
 - ㅇ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(월361천원 한도 실비 지원)
 - ㅇ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
 - ㅇ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
 - ㅇ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취학유예 및 면제 기준 강화
 -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반드시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요
 -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법 제19조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

-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,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보류

나.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통합교육 지원

- ㅇ무장애 통합놀이를 통한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지원
 - 장애·비장애 유아가 함께 놀이 프로그램 참여
- ㅇ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통합을 위한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
 - 공연 및 예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
 - 장애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공연을 통한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

다.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

○부모 상담 및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체험 등 초등학교 입학 전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

□ 유의사항

- ○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령기 의무교육 이행 독려
- ㅇ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지원
 -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 와 특수교사 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
-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발달 단계 ·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프로그램 계발





1-4 장애학생 문화예술·체육 활동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장애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·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

**교육기본법 제18조(특수교육), 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), 제20조(교육과정의 운영 등), 학교체육진흥법 14조(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)

□ 추진 내용

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·예술 활동 지원 강화

ㅇ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

프로그램	대상	내용	시기
		- 그림책 테라피	
예술융합	관내 특수교육	- 명화와 클래식	2021.4.
프로그램	대상학생	- 칼림바 악기	~11.
		- 장소: 거점학교 및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	

**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나.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

프로그램	대상	내용	시기
생활체육 프로그램	관내 특수교육 대상학생	- 배드민턴 - 권역별 월 2회기 실시 예정	2021.4. ~11.
		- 볼링 - 권역별 월 2회기 실시 예정	
		- 방송 댄스	

**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o 장애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진행
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활동
- ○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과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
- ◦전북 IT-페스티벌 대회 운영 적극 참여
 - 지역별 대회, 온라인 대회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



등합교육 내실화

- 2-1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
- 2-2 순회교육 지원 강화
- 2-3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

2-1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
- ▶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
- ▶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

※특수교육법 제21조(통합교육), 제8조(교원의 자질향상)

□ 추진 내용

- 가.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
 - ㅇ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
 -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운영
 - '통합교육지원단'을 통한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컨설팅 등 찾아가는 지원 운영
- 나. 특수·통합학급 교사 협력 강화
 - ○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
 - 통합학급 담임(담당)교사를 위한 연수 실시(연1회)

□ 유의사항

- ㅇ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연수 실행
 -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 교육연수 과정에 통합학급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

<mark>2-2</mark> 순회교육 지원 강화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· 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

※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 등), 제25조(순회교육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순회교육의 운영 등)

□ 추진 내용

- 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
 - ○순회교육 지원 대상(특수교육법 25조)
 -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·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
 -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
 -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,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

o 운영방법

- 순회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운영(돌봄, 방과후 시간에는 순회교육의 지원이 불가)
- 순회교육을 사유로 학생의 교내외 활동은 제한되거나 배제 금지
- 개별화교육계획은 소속 학교에서 작성하며 이를 통합학급 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순회교육계획에 반영
-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공통교육과정 또는 특수교육과정, 선택중심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.
- 순회교육계획에 의한 주 1~2회 이상 방문수업이 원칙이며, 가정 및 보호시설 학생의 경우 방문교육/체험학습/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운영을 통하여 최소 120~150일 수업일수 확보

o 운영형태

- 재택순회교육: 소속학교 특수학급 교사 또는 센터 순회교사가 실시
-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생: 센터 순회교사가 순회교육 실시

나.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

- ○순회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
 -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장 출석 권장
 - 선정 일정

시기	내 용	주체
3월 1~2주	순회교육 신청	학부모, 해당학교
3월 3주	대상자 심의	특수교육운영위원회
3월 4주	선정 결과 통보 및 순회교육 실시	순회교사

ㅇ순회교육 중단

- 시기: 수시로 가능
- 대상: 재배치·교육지원종료 등으로 수요가 사라질 경우, 또는 순회교육 대상 학생 중 수업일수 2/3 이상 출석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을 한 학생
- 중단절차: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와 담당교사 간 사전협의→ 순회교육 취소 신청서 교육청 제출→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→ 결과를 학교로 안내

2-3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
- ※ 특수교육법 제21조(통합교육), 특수학교시설·설비기준령 제5조(안전 및 편의 시설·설비의 종류 및 기준),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(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), 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(편의 시설 설치의 기본원칙),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(교과 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)

□ 추진 내용

- 가.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
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수·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
 - ○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·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강화

나.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

1 -11 -14 -	-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			
1. 학교 및 학부모	- 스캔 후 교육지원청(교육지원과)로 공문 제출			
	- 특수교육지원센터 공문 접수			
2. 특수교육지원센터	- 신청 물품 현황 및 대여 가능 여부 확인			
	- '대여가능' 또는 '대여불가'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통보			
	I. Carlotte and the control of the c			
	-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수령			
3. 학교 및 학부모 대여	-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및 대여 확인서 작성			
	- 대여완료			

 4. 학교 및 학부모 반납
 - 2022. 2월 2주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반납 확인서와 함께 반납

 - 대여 연장 시 진급 학년으로 재신청

ㅇ대여 선정 기준 및 절차

1) 선정기준

1순위)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없는 학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조손가정, 장애형제·자매 가정 대상자) 2순위)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학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

- 활용도가 높은 순, 재사용 가능 여부와 재대여 가능 여부, 소모품성 등 확인 3순위) 장애 급수가 높은 학생

2) 선정절차

단 계	내 용
1차 조사	보조기기 대여 안내 공문 발송 후 (재)대여 신청 접수
2차 선정	보조기기의 용도 및 사용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조정
3차 확정	우선순위 및 협의 과정에 따라 보조기기 대여 학생 선정 및 해당 보조기기 지원

ㅇ기간: 2021 연중 실시

ㅇ대상: 김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

ㅇ운영 방침

- 1)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원본을 스캔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
- 2)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재신청
- 3) 본 기기를 타인 또는 다른 학교에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함
- 4) 사용학생이 졸업, 전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도록 하며 지속해서 대여할 경우 전출된 학교에서 재신청을 하도록 함
- 5) 학교 내 수업 및 이동을 위해 사용하고,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
- ※ 단,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순회교육으로 인해 가정에서 대여 가능
- 6) 대여 물품의 수령 및 반납은 신청학교 담당교사나 학부모가 직접 센터로 방문 하여 실시
- 7) 대여기간 중 발생하는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은 대여 학교에서 부담하되 개인 실수나 고의인 경우 현물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
- 8)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는 거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에서 교수학습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심으로 지원

ㅇ장애 유형별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현황

지원센터명	설치 장소	연락처
청각장애거점지원센터	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	070-4942-6882
지체장애거점지원센터	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	451-4953
자폐성장애거점지원센터	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	831-8681
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	전북맹아학교	835-1763

- ◦보조공학기기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
- ○보조공학기기 대여 후 사용점검 및 관리 철저
- ◦보조공학기기 사용점검 및 유지·보수 철저

03 특수교육 진로 · 직업교육지원

- 3-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·직업 교실 운영
- 3-2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원

3-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·직업 교실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(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) 강화
- ▶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 확대
- ※특수교육법 제23조(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)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(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), 제18조(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)

□ 추진 내용

- 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·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○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진로 인식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
 - ○우리 마을 직업체험, 자격증반, 취업 전 교육을 통해 진로 체험의 기회 확대 및 진로 역량 개발
 - ㅇ운영내용

프로그램	대상	내용	장소	시기
	초등학생	- 제과제빵 - 토탈공예	진로체험실1	연중
진로탐색 프로그램	중학생	진로체험토탈공예카페보조	각 특수학급 및 진로체험실2	연중
	고등학생	- 토탈공예	진로체험실1	연중
자격증반	고등학생	- 바리스타 2급 등	진로체험실2	연중
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	고등학생	- 이미지메이킹 - 장애 청소년 진로교육	진로체험실2	연중
우리 마을 직업체험	중·고등학생	- 직업체험 현장실습	관내 체험처	연중

**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나.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·직업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

- ◦「Cafe' 꿈내림」운영
 - 목적: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후 바리스타 직무 기술을 지역사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역량 신장
 - 시기: 2021.7.~8. / 2021.12.~2022.1.
 - 내용: 주문받기 및 결제하기, 주문받은 음료 만들기, 서빙하기 등

- ○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'개별화전환교육계획'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
- ㅇ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및 점검 철저
- o교사 평가회를 통한 진로·직업교육 운영 결과 평가 및 환류





3-2 일상생활 적용 프로그램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위생교육과 정리수납교육을 통해 학생과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
- ▶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심과 대인관계 기술 향상
- ※ 특수교육법 제23조(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)

□ 추진 내용

- 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청결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
 - ㅇ이론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위생용품을 만들고,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
 - ㅇ정리수납 교육을 통해 정리하는 습관을 형성하여 자기주도력 향상

프로그램		대상	장소	시기
위생교육	- 손세정제 만들기		거점학교	
刊′8世年	- 폼클렌징 만들기	초등학생	학급 또는	2021.4.~7.
정리수납	- 책상, 사물함 정리수납			2021.4.~7.
교육	= ^픽'ð, 시골립 정부구립 		진로체험실1	

※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나. 특수교육대상학생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•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정보 제공

	프로그램	대상	장소	시기
사회적응 프로그램	- 대중교통 이용하기 - 공공기관 이용하기 - 소비계획 및 경제활동	유·초·중· 고등학생	해당 기관 및 지역사회	2021.4.~7.

※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다.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

○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·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

프로그램		대상	장소	시기
여름 · 겨울 방학 프로그램	요리, 원예 등 일상생활 관련 프로그램공동체 활동을 통한 기본질 서, 청결, 공동체 의식함양	유·초·중·고등 학생	진로체험실	1월, 8월





04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

- 4-1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
- 4-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
- 4-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·평가 지원
- 4-4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

4-1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학교의 학생, 교사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 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
 - ※ 초·중등교육법 제59조(통합교육), 특수교육법 제21조(통합교육),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장애인식개선교육)

□ 추진 내용

가.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

○다양한 체험과 이론교육으로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통합 교육 여건 개선

프로그램	대상	내용	시기
찾아가는	유아, 초등학생	- 장애인식개선 강의	2021.4.~12.
장애인식개선교육	(1~3학년)	- 장애 체험 등	2021.4.712.

**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나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○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장애인식 개선

프로그램	대상	내용	시기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교육지원청원	- 장애인의 인권과 관 련된 법과 제도 등	2021.7.

- ㅇ장애이해교육 철저
- ○각급 학교 학생 대상 연 2회 장애이해교육 실행
- ㅇ각급 학교 교직원 대상 연 1회 장애이해교육 실행





4-2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
- ▶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자기 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
- ※특수교육법 제4조(차별의 금지), 제8조(교원의 자질향상), 제20조(교육과정의 운영 등), 제21조(통합교육),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(차별금지)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(장애학생의 보호)

□ 추진 내용

가.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

○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(성)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인권지원단 설치·운영(21년 인권지원단 운영 메뉴얼 참고)

구분	구성	내용	시기
		-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: 연 2회 이상	
		- 현장 지원: 월 1회 이상 학교 현장 직	
		접 방문 점검	
	센터장, 담당 장학사,	- 특별지원: 특별 사안 발생 시 즉시 대	
	특수교육지원센터	응 및 조치	
장애학생	특수교사, 특수학급	- 지원내용: 학교폭력·성폭력 예방 지원과	2021.3.
인권지원단	교장(감), 경찰서 성폭력	연수, 더봄학생 선정·지원, 우수사례 발굴과	~
운영	담당자, 상담 전문가 등	홍보 등	2022.2.
	필수인원 포함하여 8명	- 결과 보고: 현장 지원 결과를 매월 30	
	이상 구성(3월 초)	일까지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(취	
		합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보고)	
		※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	
		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	

ㅇ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학교 정기현장지원 일정

월	학교급/학교명				합계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유	초	중	ਹ	합계
3월		성덕초, 죽산초			2
4월		황강초, 공덕초		덕암정보고	3
5월		만경초, 부용초	김제중		3
6월	김제동초 병설유치원	김제동초	금성여중		3
7월		김제검산초, 백석초, 난산초			3
8월	해바라기 유치원	원평초, 화율초			3
9월		김제북초, 황산초		마이스터고	3
10월	김제초 병설유치원	김제초, 청하초			3
11월		김제중앙초, 남양초	김제여중	김제여고	4
12월	봉남초 병설유치원	봉남초, 초처초	봉남중		4
2022.		심창초, 진봉초,			3
1월		청운초			
2022. 2월		용지초, 용동초	용지중		3
계	4	25	5	3	37

*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나. 더봄학생 지원

- ㅇ더봄학생 맞춤지원 프로그램
 - 학년 초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현황 파악
 -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
 - 더봄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

- 성교육 및 상담, 사회관계 향상프로그램, 원예테라피 등

다. 지역사회 연계 장애·인권교육사업「2021. 편견없는 마음이음 프로젝트」

- 연계기관: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,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전북보조기기센터
- ㅇ운영내용

프로그램	대상	내용	시기
장애·인권 TF팀 회의 및 협의회	사업연계기관 및 참여 학교 담당자	- 장애·인권교육 사업에 관한 내용 협의	월 1회
찾아가는 장애·인권교육	초등학교 4~6학년, 중·고등학생	- 장애유형별 이해 및 장애체험교육, 발 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법 등	2021.4.~6.
장애·인권 캠페인	초등학생	- 장애·인권 문구 제작, 등굣길 홍보 등	2021.4.
다같이 장애·인권 챌린지	중학생	- 장애·인권 온라인 퀴즈 및 동영상 챌린지	2021.10.

라.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교육 강화

ㅇ학생 발달단계별 맞춤형 수업

프로그램	대상	내용	시기
찾아가는 집단상담 성교육	관내 특수교육	-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- 학교 또는 권역별 연2회 실시 예정 - 장소: 특수학급	2021.4.~11.
체험관 성교육	대상학생	- 기관 방문을 통한 학생 발달단계별 맞춤형 수업 - 8회 실시 예정 - 장소: 익산 청소년 성문화 센터	4월, 9월

- ㅇ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 인지 시 즉시 신고 및 보고(수사기관, 교육청)
- ㅇ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행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
- ㅇ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철저
- ㅇ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
- ㅇ특수교사의 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행 및 참여
- ㅇ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행
 -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 보호 역량 강화(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'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' 활용)





4-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·평가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진단·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

※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 등), 제10조(특수교육운영위원회), 제14조(장애의 조기발견 등), 제18조(장애영아의 교육지원)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장애영아의 교육지원)

□ 추진 내용

가. 진단·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일정

순	진단평가 일정	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	심의내용			
1	2021.3.8.~3.26.	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-선정.배치, 유예, 선정취소, 등			
	2021.0.0. 0.20.	2021.4.6.(화) 14:00~				
2	2021.4.19.~5.14.	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-선정.배치, 유예, 선정취소, 등			
۷	2 2021.4.10.30.14.	2021.4.10. 0.14.	2021.5.25.(화) 14:00~			
3	2021.6.21.~7.9.	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-선정.배치, 유예, 선정취소, 등			
3	2021.0.21.~7.9.	۵۰۵1.0.21.~7.3.	2021.0.21.~7.3.	2021.0.21.~7.3.	2021.7.20.(화) 14:00~	-2022년 고등학교 입학(배치) 관련
4	2021.8.16.~9.3.	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-선정.배치, 유예, 선정취소, 등			
4	2021.0.10.~9.5.	2021.9.28.(화) 14:00~	-2022년 유·초·중 입학(배치) 관련			
5	2021.10.18.~11.5.	5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선정.배치, 유예, 선정취소, 등			
3	2021.10.10.~11.3.	2021.11.16.(화) 14:00~	-2022년 유·초·중 입학(배치) 관련			

*계획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*서면심사(재배치)는 수시로 실시

나. 진단평가 위원 대상 진단평가 도구 연수

○ 진단평가 위원의 전문성을 위한 지능검사, 기초학습능력검사 등에 대한 연수 실시

□ 유의사항

○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·배치 업무 메뉴얼 숙지하여 해당 학생이 심사에 누락 되지 않도록 안내

4-4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소통 지원
- ▶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의 역량강화 및 통합적 분위기 조성

※특수교육법 제28조(특수교육 관련 서비스)

□ 추진 내용

- 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
- ㅇ학부모의 역량강화 및 양육정보 교류를 위한 학부모 동아리 운영
- ㅇ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
프로그램	대상	운영내용	시기
학부모 동아리	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	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학부모 강사 초청을 통한 자녀 양육 경험 및 정보 공유	4~12월
「가족사진 찍는날」	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	- 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사진 촬영 -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여 긍 정적인 가족상 확립	5~6월



05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강화

- 5-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
- 5-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- 5-3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아 무상교육 지원
- 5-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
- 5-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
- 5-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

5-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
- ▶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

※특수교육법 제28조(특수교육 관련 서비스)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(치료지원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장애의 조기발견), 제4조(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)

□ 추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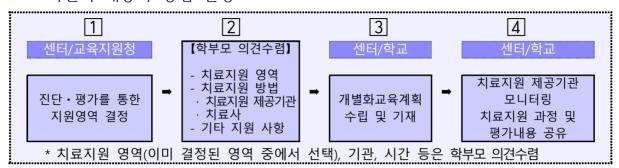
- ㅇ지원 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필요 학생
 -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는 지원 불가
 -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불가
- ㅇ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
-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보행훈련, 기타 관련서비스(음악, 미술, 심리 운동, 감각통합)
 -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리 작업치료는 지원 불가
- 보건복지부 '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'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• 지원 방법
 -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: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 -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의 치료지원(한시 운영사업으로 추후 종료 예정임)

영역	대상	장소	시기
음악치료	순회치료지원 신청학생	학교 또는 가정 등	2021.1.~12. (방학 포함)

☞ 위 방법 중 한 가지 선택

-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: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(전자카드발급)
-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(비영리기관일 경우 가능함)
- 치료지원 관계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- ㅇ치료지원 제공 절차

-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·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(치료지원 포함)
-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영역 안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



- ㅇ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
 -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소지자(물리치료, 작업치료)
 - 국가자격 소지자(언어치료)
 -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소지자
- ○치료지원 전자카드「꿈 활짝 카드」사용 안내 (http://jbe.nhdream.co.kr/)

① 카드 신청 및 (재)발급

-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

② 이용 장소

-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(드림스 APP또는 홈페이지에서 대상 가맹점 조회가능)

③ 이용 방법

- 매월 1일 지원액이 포인트로 생성
- 매월 말일 월 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

- ㅇ치료지원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
 - 치료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 방지 철저
 - 치료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
- ㅇ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 내용 정비(연 2회, 3월, 9월)
- ㅇ미인증 사설 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 발생 방지를 위한 서류 검토

5-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지원

※특수교육법 제28조(특수교육 관련 서비스)

□ 추진 내용

ㅇ지원대상

-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자
-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 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
- 제외대상: 취학유예자, 무료통학버스 이용자,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관련 지원 대상자 등

□ 유의사항

○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5-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공·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

※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)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의무교육의 비용 등)

□ 추진 내용

가. 유아무상교육 지원

- ㅇ지원 대상
 -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(단설, 병설)과 사립 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에 의한 장애로, 반드시 시·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·배치된 유아
- ㅇ운영 내용
 - 사립: 1인 월 361천원 이내 실비 지원(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) ※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함

- ○취학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, 초등학교 취학 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
- ○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 저히 확인하시기 바람
- ○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(15일 미만 출결 할 때 날짜로 계산함)
- ○유아 1인당 학비가 사립 월 36만1천원을 초과할 때도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 지 않도록 조치
- ㅇ공립 특수학교(급)와 공립유치원, 어린이집은 지원 제외임

5-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

※특수교육법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제26조(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)

□ 추진 내용

- 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
 - ㅇ방과후학교 운영 내용
 -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
 - 특수학교: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
 - 일반학교: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과 일반 방과후 과정 중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
 -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확대 운영
 - ㅇ지원기준
 - 1개 프로그램 당(4명 이상 기준, 유치원은 3명 이상) 월 60만원 지원 ※ 단,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
 - 참여 학생이 1~3명(유치원은 1~2명)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10만원 지원
- 나. 유치원특수학교(급)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
 - ㅇ지원대상: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(급)
 - ㅇ지원기준: 방과 후 과정 3명 이상 운영 학급

- ㅇ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ㅇ방과후학교 지원, 방과 후 자유수강원, 누리과정 방과후 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

- ㅇ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관리 철저
- ㅇ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(보건복지부) 안내

♠ 관련 업무계획 ♠

- *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는 **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만 지 워**되므로 선정·배치 상황을 정확히 확인 후 실행
- 치료지원, 통학비 지원,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, 방과 후 학교

□ 집행잔액 반납 □

- O 집행잔액 반납 (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모두 동일 ← 잔액 10만 원 이상)
- 반납 시기: 2022. 2월 중
- 반납 절차
- . 공립: 에듀파인 교육비 특별회계 징수 → 반납고지서 출력 → 납부(농협)
 - . 사립 고·특수학교: 해당 학교에서 본청 재무과에 납입 고지 요청 → 반납고지서 수령 → 납부(농협)
- . 사립 중학교: 해당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경리부서에 납입 고지 요청 → 반납고지서 수령 → 납부(농협)
 - ※ 원단위 반납금지(국고금 관리법 47조에 근거)
- 에듀파인 시스템 반납 처리 절차
- ① (학교회계) 2021년 회계연도 세입에서 과오납반환결의
- ② (학교회계) 2021년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액 조정
- ③ (교특회계) 수입관리-수입 현황-징수/반환현황-계획 작성-그 외 수입
- ④ (교특회계)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그 외 수입 징수결의(학교 대상 여부:아니오)
- ⑤ (교특회계) 반납고지서 출력 → 납부
- ㅇ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관리 철저

5-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- ▶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
- ▶ 개별화된 학습지원, 심리·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
- ※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 등),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, 제25조(순회교육 등), 초· 중등교육법 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(수업운영방법 등)

□ 추진 내용

- 가.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안내 •대상
 - 건강장애학생: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 - 보호필요학생: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질병, 화상,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(유급)이 예상되는 학생
 - o병원학교
 - 운영기관: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한누리 병원학교
 - ※ 전국 병원학교 안내 홈페이지: http://hospital.s4u.kr/main.do
 - 신청절차: 소속학교(초·중·고등학교)에서 병원학교로 직접 신청
 - → 병원학교에서 입급 확인서를 소속학교로 통보
 - -개별화된 학습지원, 심리·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도모
 - o 원격수업
 - 운영기관: 한국교육개발원(스쿨포유), 꿈사랑학교
 - 개별화교육계획 수립: 소속학교 담임, 특수교사, 원격교육기관이 상호 협력 하여 건강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
 - 원격수업 입교·퇴교 절차: 학생·학부모→소속학교→도교육청→운영기관
 - 초등학교(1일 1시간 이상 수강), 중·고등학교(1일 2시간 수강) 수업 참여

- ㅇ학적과 성적처리 지침 내용
 - (학적 또는 출결)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출결은 위탁 교육기관의 원격 수 업 참여일 수를 기본으로 함
 - 학교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,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, 원격수업 등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음
 - (평가) 수행평가,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
나.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담임(담당)교사 교육 강화

- ○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자 연수 연 1회 이상 ※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, 성적관리는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준수
- ㅇ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, 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연수 강화

다.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재선정

- ○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·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,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
 - **건강장애 선정은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 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
- ○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는 선(先)교육 지원 가능

- ○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,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
- ○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'건강장애 이해 증진'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원
- ○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
- ㅇ정신질환학생은 건강장애 선정과 원격수업 수강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안내
- ㅇ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원격수업 수강 해지 절차 안내

5-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

□ 추진 목적 및 근거

▶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특수교 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성과 제고

※특수교육법 제21조(통합교육), 제22조(개별화교육), 제28조(특수교육관련서비스)

□ 추진 내용

가.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

- ㅇ지원대상
 -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도·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속한 학급을 기준으로 운영
- ○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
 -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, 신변처리, 급식, 교내외 활동,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담당
- ○특수교육지도사 활용
 - 특수교육지도사는 중도·중복장애학생 1~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,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 지도에 대해 지원함
- ㅇ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
 - 장애학생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할에 준함

- ㅇ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
 - 근무: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임
 - 근무 일수: 기존 연봉 체계의 일급 단가 및 연봉기준일 수(290일)는 폐지되고 월급

체제로 전환(2014.1.1.)됨

- ○근로시간 준수 철저
 - 주 근로시간 40시간 준수,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
 - 1박 2일 이상 숙박형 체험학습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동반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학생지원 업무를 하지 않도록 주의

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 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○특수교육지도사의 방과후학교, 돌봄 지원이 고유 업무이므로 방학 중에 실행되는 방과후학교 운영 시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원 실행
- ○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 행·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

VI부록 1.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2021년 업무 추진 계획

월	주요행사	시기	대상
연중	•순회치료 •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		특수교육대상학생
1	•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1차	1.11.~1.15.	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
1	•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2차	1.18.~1.22.	유·초 특수교육대상학생
2	•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	2월중	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
3			
	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바리스타 자격증 교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·직업교실 문화예술·체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집단상담 성교육 실시 		특수교육대상학생
	•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	4~12월	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
	• 더봄학생 맞춤지원 프로그램		더봄학생
	 찾아가는 장애·인권교육 실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		일반학급 학생
4	• 2021. 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4.6.(화)	신청학생 및 학부모
		4.12.(월)	특수교육대상 유아
	• 1학기 체험관 성교육 프로그램	4.13.(화)	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
	(익산 청소년 성문화 센터)	4.21.(수)	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
		4.22.(목)	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
	•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차 협의회 및 연수	4.15.(목)	인권지원단 위원
	• 장애인식개선 캠페인	4.19.~4.23.	초등 일반학급 학생
F	•「가족사진 찍는날」	5~6월	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
5	• 1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		특수학급 담당교사

	• 2021. 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5.25.(화)	신청학생 및 학부모
6	• 특수교사 자율연찬회「특.수.다.」	6.24.(목)	특수학급 담당교사
	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연수		김제교육지원청원
	• 카페 운영「꿈내림」	7~8월	바리스타 자격증반 특수교육대상학생
7	• 2021. 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7.20.(화)	신청학생 및 학부모
	• 특수교육지원센터 워크숍		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
	•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 1차	8.2.~8.6.	유·초 특수교육대상학생
8	•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 2차	8.9.~8.13.	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
	• 진단·평가위원 역량강화 연수		진단·평가위원
		9.6.(월)	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
	• 2학기 체험관 성교육 프로그램	9.7.(화)	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
	(익산 청소년 성문화 센터)	9.13.(월)	특수교육대상 유아
9		9.14.(화)	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
	•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2차 협의회	9.9.(목)	인권지원단 위원
	• 2021. 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9.28.(화)	신청학생 및 학부모
	• 2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		특수학급 담당교사
10	• 장애인권 챌린지		중등 일반학급 학생
	• 2021. 5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	11.16.(화)	신청학생 및 학부모
11	•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실사단 운영	11.22.~12.3.	학생, 학부모
	• 3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		특수학급 담당교사
10	• 2021. 특수교육지센터 평가회		특수교사, 센터 교사
12	• 카페 운영「꿈내림」	12~1월	바리스타 자격증반 특수교육대상학생

※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VI부록 2. 특수학급 및 미설치교 현황

(기준: 2021.1.1.)

٦	하그매	특수	배	치 학생	수	미성원교	배	치 학생	수	총
순	학교명	학급수	남	여	계	미설치교	남	여	계	학생수
1	김제초병설	2	6	2	8					8
2	김제동초	1	3		3					3
3	해바라기 유치원					1	1		1	1
5	금남초병설					1	1(유예)		1	1
6	별초롱 어린이집					1	2(유예)		2	2
	유아	3학급	9	2	11	3학급	4		4	15
7	공덕초	1	3	1	4					4
8	김제초	2	6	4	10	2	1	1	2	12
9	검산초	1	5	1	6	1	1		1	7
10	김제동초	1	6		6	3	1	2	3	9
11	김제북초	1	6		6					6
12	김제중앙초	1	2	4	6					6
13	난산초	1	5		5					5
14	남양초	1	2		2					2
15	만경초	1	2	1	3					3
16	백석초	1	5	1	6					6
17	봉남초	1	3	3	6					6
18	부용초	1	2		2	1	1		1	3
19	성덕초	1		1	1					1
20	심창초	1	1		1					1

21	용동초	1	2		2	1	1		1	3
22	용지초	1	1	1	2					2
23	원평초	1	1		1	1	1		1	2
24	죽산초	1	4		4	1		1	1	5
25	청하초	1		1	1					1
26	황강초	1	1	1	2					2
27	황산초	1	1	2	3					3
28	진봉초					2	2		2	2
29	초처초					1	1		1	1
30	청운초					1		1	1	1
31	화율초					1	1		1	1
	초등	22학급	58	21	79	15학급	10	5	15	94
32	김제중	2	12		12	1	1		1	13
33	김제여중	1		5	5					5
34	용지중	1	1	2	3	1	1			4
35	금성여중					1		1	1	1
36	봉남중					1		1	1	1
37	청하중					2	1	1	2	2
	중등	4학급	13	7	20	6학급	3	3	6	26
38	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	1	4		4	1	1		1	5
39	김제여고	2		8	8					8
40	덕암 정보고					1		2	2	2
	고등	3학급	4	8	12	2학급	1	2	3	15
	합계	32학급	84명	38명	122명	26학급	18명	10명	28명	150명

-	64	-	

- (65	-
-----	----	---

2021. 김제특수교육 운영계획

발 행 처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	
홈페이지	http://jbgje.go.kr/
주 소	김제시 요촌북로 70
전 화	(063) 540-2591
F A X	(063) 540-2570